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금융위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0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3건 수용, 지정내용 변경 2건 등 의결 -

금융위원회는 12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 구 분 | 업체명 | 서비스명 |
|-----------------------|----------------|---|
| 신규 지정 (10건) | 동양생명보험 외 8개사* |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
| | 한국거래소 |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
| 규제개선 요청 수용 (3건) | 한화투자증권 |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
| | 한국증권대차 |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
| | 카사코리아-4개 신탁사** |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
| 지정내용 변경 (2건) | 중소기업은행 |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 | 카사코리아-4개 신탁사** |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

* 동양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악사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총 9개사)

**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동양생명보험 외 8개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 시 뿐만 아니라 유통 시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개설을 허용하여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 권리(미술품, 저작권 등)에 대한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그리고, ①한화투자증권, ②한국증권대차, ③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①‘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②‘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③‘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통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 | | | | |
|-------|--------------------|-----|-----|--|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 책임자 | 팀 장 | 김보균 (02-2100-2841)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예빈 (02-2100-2859) |
| <공동>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책임자 | 과 장 | 김수호 (02-2100-2970) |
| | | 담당자 | 사무관 | 안영비 (02-2100-2975) |
| <공동> | 금융위원회 은행과 | 책임자 | 과 장 | 강영수 (02-2100-2950)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수암 (02-2100-2676) |
| <공동>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책임자 | 과 장 | 고상범 (02-2100-2650) |
| | | 담당자 | 사무관 | 정종헌 (02-2100-2654) |
| <공동>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책임자 | 과 장 | 고영호 (02-2100-2660) |
| | | 담당자 | 사무관 | 신용진 (02-2100-2663) |
| <공동> |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 책임자 | 국 장 | 백규정 (02-3145-7120) |
| | | 담당자 | 팀 장 | 조강훈 (02-3145-7140) 안태승 (02-3145-7125) |
| <공동> |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 책임자 | 국 장 | 박상현 (02-3145-7500) |
| | | 담당자 | 팀 장 | 류영호 (02-3145-7502) |
| <공동>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 책임자 | 국 장 | 서재완 (02-3145-7580) |
| | | 담당자 | 팀 장 | 박재영 (02-3145-7590) |
| <공동>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 책임자 | 국 장 | 임권순 (02-3145-6700) |
| | | 담당자 | 팀 장 | 이은영 (02-3145-6702) |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0건)

①~⑨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동양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약사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비엔피파리바카디프 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회사 본사 및 영업점 임직원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업무 협업도구(M365)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합니다.

[특례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나, 내부업무용 단말기(또는 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22.4.15.)」의 후속조치로서 KB라이프생명 보험 등 6개사에 대해 동 건과 유사한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既지정(23.9.13.)

[기대 효과]

임직원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 공유와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신속한 민원 해결 등이 원활해져 소비자 편익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보안대책 수립·이행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허용된 업무 범위(업무 종류, 데이터 범위, SaaS 서비스 종류 및 SaaS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 내에서 SaaS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처리대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외

[향후 일정]

'24년초 서비스 이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⑩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한국거래소)

[서비스 주요내용]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내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하여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상장·공시·청산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권리(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 분산원장기술 기반 토큰증권이 아닌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상장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일반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하여 주식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종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토큰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방안(23.2.6)」의 후속조치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①제4조, ②제373조의2 및 제373조의6

③제387조,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 제412조

①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중개업자 특례, 증권 발행,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인정되나, 투자계약 증권이 발행 이후 매매, 중개 등 ‘유통’에 있어서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②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허가받은 시장 개설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거래소는 이에 대한 시장 개설 및 운영이 불가능하나, 거래소가 투자계약증권 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③ 거래소는 증권시장 개설시 회원·업무·상장·공시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신규 시장의 변동성, 비정형적 신종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시장 관리를 위해 거래소가 「시장운영 규정」을 마련(금융위 보고)하여 신종증권 시장의 회원·업무·상장·공시 규정을 탄력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부가조건]

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개설과 관련해서 ①증권상장규정, 공시규정 등 「신종증권 시장운영규정」을 마련하고, ②매매체결시스템, 상장공시시스템 등 IT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③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신종증권 시장 감시기준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소는 지정기간 종료에 따른 정리절차 등 운영계획, 분쟁처리·조정, 발행·유통규제 등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기대 효과]

그간 일반투자자에게는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경쟁 매매 방식의 장내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되며, 발행인의 경우에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시장운영규정 수립, IT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24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수용 (3건)

①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22.2.16. 연장)

비대면 계좌개설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촬영 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하나(영상통화를 대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규제개선 요청 수용]

한화투자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금융위 유권해석)」 등에 대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며, 개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

②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한국증권대차(舊 트루테크놀로지스))

[서비스 개요] ('19.12.18. 지정, '21.11.12. 연장)

기관투자자 간 증권 대차거래 협의 과정을 전산화하고 조건(종목·요일·수량)이 맞는 대역자와 차입자를 자동으로 매칭하여 대차거래 중개를 지원하는 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0조, 제1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8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인·허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등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규제개선 요청 수용]

한국증권대차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

③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카사코리아,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서비스 개요] ('19.12.18. 지정, '21.12.8. 연장)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유통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 제373조, 제11조에 따른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수익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거래소 허가, 투자중개업 인가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왔습니다.

[규제개선 요청 수용]

카사코리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2건)

①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기존 지정내용] ('23.7.19. 지정)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하나(영상통화를 대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왔습니다.

[지정내용 변경]

비대면 실명확인시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에 외국인등록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법무부에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시행('23.9.18.) 하면서 외국인등록증에 대해 주민등록증, 여권 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시 허용되는 실명확인증표의 범위에 '외국인등록증'을 추가**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금융위 유권해석)

** (기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변경)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카사코리아,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기존 지정내용] ('19.12.18. 지정, '21.12.8. 연장)

※ 상기 카사코리아 및 한국토지신탁 등 4개사의 규제개선 요청 건의 [서비스 개요]와 동일

[지정내용 변경]

카사코리아는 공동신청인으로서 신탁부동산의 관리, 수익증권 발행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 중 2개사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였고, 기존 공동신청인과 협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영업기반 확대 등을 위해 신탁회사를 변경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며, 신규 공동신청인들은 자본시장법상 전업 부동산 신탁사로서 해당 업무 수행기반을 갖추고 있고 투자 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어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 공동신청인(신탁회사): (기존)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국민은행, 하나은행
→ (변경)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추가 부가조건]

다만, 변경되는 공동신청인 중 1개사(대신자산신탁)가 카사코리아와 계열 관계*에 있어 수익증권 발행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바, 카사코리아는 대신자산신탁과 신규 수익증권 발행에 앞서 계열 회사와 협업에 따른 법령위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 및 방지체계 구축, 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의 자회사이고, 카사코리아의 최대주주(대신프라퍼티)는 대신증권의 또 다른 자회사로서 두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관계에 해당